

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

8

제출일자 : 1998. 4. 7.

제 출 자 : 거 창 군 수

■ 개정 이유

-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의 수강료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 시설의 사용신청 또는 수강신청후 후 이용을 포기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 하였으나, 이를 개선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사용을 포기할 경우에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토록 하며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1997. 2. 4 대통령령 제15267호)이 개정되어 사업소 및 출장소장의 직급,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복지관장의 직급 조항을 삭제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

■ 주요 골자

- 제명중 “설치”를 “설치및운영”으로 함
- 관장의 직급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함(안 제4조)
- 수강료 납부사항을 정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6조제2항)
- 수강료를 교육과정별로 1개월당 8,500원으로 함(별표1)

■ 개정 근거

-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2 제2항(1997. 2. 4개정)
- 각종 회관의 사용료등 징수제도 개선(내무부 공기13388 - 747, 1997. 11. 25)

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설치” 다음에 “ 및 운영”을 삽입한다

제1조중 “이 조례는 ”을 삭제한다

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 제2항을 삭제 한다

- ①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.

제6조 조제목 “시설의 사용”을 “사용료 및 수강료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선납하여야 한다
-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,.

제6조제3항 본문중 “사용료” 다음에 “및 수강료”를 삽입하며, 동조 동항 제1호중 “사용”을 “이용”으로 한다

[별표1] 종합사회복지관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중합사회복지관 사용료 및 수강료

구 분	기 준	요 액	비 고
1. 대강당 주 간	1회 3시간	40,000원	· 3시간 초과 매시간 10,000원 가산 · 토,일 공휴일은 평일 총요금의 30% 가산
야 간	1회3시간	50,000원	
2. 소강당 주 간	1회 3시간	10,000원	· 3시간 초과 매시간 5,000원 가산 · 토,일 공휴일은 평일 총요금의 20% 가산
야 간	1회 3시간	15,000원	
3. 부업훈련 과정별	1월	8,500원	(신설)
4. 취미교실 과정별	1월	8,500원	"
5. 아동교실	1월	8,500원	"
6. 노인교실		무 료	"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<u>설치</u>조례중개정조례안</p> <p>제1조(설치) <u>이 조례는</u> 저소득 계층의 자활,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(이하 “복지관”이라 한다.)을 둔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설치및운영</u> -----</p> <p>제1조(설치)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4조(관장)①복지관에 관장을 두며,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</p> <p>②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</p>	<p>제4조(관장) 복지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.</p> <p>② (삭제)</p>
<p>제6조(시설의 사용)①복지관 시설을 <u>사용</u>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정한 <u>사용료</u>를 납입하고 사용승락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할수 있다.</p> <p>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.</p> <p>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사용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활보호 대상자가 <u>사용</u>하는 경우 2. (생략) 	<p>제6조(사용료 및 수강료)① 복지관 시설을 <u>사용하거나 수강</u>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<u>사용료 및 수강료</u>를 선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<u>사용료 및 수강료</u>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생활보호대상자가 <u>이용</u>하는 경우 2. (현행과 같음)